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15

발의연월일: 2020. 9. 22.

발 의 자:유동수·송옥주·박 정

정춘숙・윤재갑・신정훈

전혜숙 • 이태규 • 이개호

이성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금융기관·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제공받을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,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주택금융 이용자,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주택금융 등을 신청할 때 각종 필요서류를 직접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번거로움이 큰 상황임. 또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으로인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고 있어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혜택이 그 외의

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공사로 하여금 주택금융 이용자,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 이용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,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,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・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4조, 제64조의2, 제64조의3 및 제67조).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 및 제2항에"를 "제1항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자료제공 요청"을 "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"으로, "자료제공은"을 "제공은"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,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"대상자등"이라 한다)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
- 1.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가. 행정안전부장관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대하여 「주민등록 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 - 나.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 - 다.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출입국 또는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실증명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

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라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,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하여 「인감증명법」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
- 2.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가.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다음의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 - 1)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・수급권자
 - 2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·수급권자·차상위 계층
 - 3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- 4)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·수급권자
 - 5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・의상자
 - 나.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하여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 - 다.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다음의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 한 전산정보자료
 - 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 공자
 - 2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

- 3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 자
- 4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·등록 된 사람
- 5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
- 6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 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- 7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 자
- 라. 통일부장관에 대하여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대상자에 해당되 는지 여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- 마.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가입자 자격의 취득·변동·상실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- 바.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하여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및 「고용보 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- 사.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

- 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- 3. 소득·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 료
 - 가. 국세청장에 대하여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국세에 관한 전산 정보자료 및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사업자 등록·변경·말 소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 - 나.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지방세 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 - 다.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, 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, 「군인연금법」, 「별정우체국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, 「고용보험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・연금・급여나 그 밖의 금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 - 라.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 등록 등 차적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 - 마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

른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금융정보"라 한다)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
- 바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신용정보"라 한다)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- 사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보험정보"라 한다)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- 4. 부동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가.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 - 1)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
 - 2)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에 따른 지역·지구등의 토지이용계 획확인서
 - 3)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대장
 - 4) 「주택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분양권, 조합원으로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등

- 5)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의 매매 계약·공급계약 등 부동산 거래
- 6)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의 소유현황 및 이력 나.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 - 1)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부동산등기
 - 2)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주택임 대차계약증서
- 5. 그 밖에 대상자등의 인적사항·소득·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- ②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대상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제출받아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,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.
- ⑥ 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절차, 동의의 방법·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4조의2(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) ①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는

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,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, 「주택법」 제88조에 따른 주택정보체계 및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- ②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64조의3(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) ①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등이 제6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

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1항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의 손상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① 제6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

제64조(자료제공의 요청) ① 공사 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금 융기관,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「국민건강보 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 단,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개 정 안

제64조(자료제공의 요청) ① 금융 위원회 또는 공사는 제22조제1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서 주택금융 이용자,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(이하 "대상자등"이라 한다)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 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

- 1.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

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

 정보자료
 - 가. 행정안전부장관, 시장· 군수·구청장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 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 보자료
 - 나.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

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

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

 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

 산정보자료

- 다. 법무부장관에 대하여

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
 출입국 또는 외국인등록에
 관한 사실증명 및 「재외
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
 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전산
 정보자료
- 라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 도지사·시장, 군수 및 자 치구의 구청장에 대하여 「인감증명법」에 따른 인 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- 2.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또는

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

 정보자료
 - 가.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
 다음의 사람에 해당되는지
 여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 1)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
 건조연금 수급자・수급
 권자
 - 2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 법」에 따른 수급자・수 급권자・차상위계층

- 3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 4)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 른 수급자·수급권자
- 5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・의상자
- 나.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하여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 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- 다.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다음의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 - 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 - 2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 유공자
 - 3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
 - 4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

열제후유증환자·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로서 같 은 법 제4조에 따라 적 용 대상자로 결정·등록 된 사람

- 5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 공자
- 6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
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
 같은 법 제5조에 따라
 등록된 사람
- 7)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5・18민주유공자
- 라. 통일부장관에 대하여

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

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

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

 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지

 여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
 마.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 에 대하여 「국민건강보험

법」에 따른 가입자 자격 의 취득·변동·상실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 한 전산정보자료

바.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하
 여 「고용정책 기본법」
 및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
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전
 산정보자료

- 사.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「산업재해보상보 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 상보험 가입에 관한 전산 정보자료
- 3. 소득·재산에 관한 자료 또 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 산정보자료
 - 가. 국세청장에 대하여 「국

 세기본법」에 따른 국세에

 관한 전산정보자료 및

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

 사업자 등록・변경・말소

 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 - 나.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 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전산

정보자료

다.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 민연금법」, 「공무원연금 법」, 「공무원 재해보상 법」, 「군인연금법」, 「별정우체국법」, 「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 . . 「고용보험법」, 「산업재 해보상보험법」, 「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」, 「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」, 「참 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 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각종 수당 · 연금 · 급 여나 그 밖의 금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
라.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

자동차 등록 등 차적정보 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
마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금융정보"라 한다)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
바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신용정보"라 한다)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
<u>사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</u> <u>험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</u>

제4조제1항각 호에 따른보험에가입하여 납부한보험료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보험 관련자료또는 정보(이하 "보험험정보"라한다)에 관한전산정보자료

- 4. 부동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

 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

 보자료
 - 가.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다음의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
 - 1)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
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 에 따른 지적전산자료
 및 부동산종합증명서
 - 2)
 토지이용규제
 기본

 법」에
 따른
 지역・지구

 등의
 토지이용계획확인

 선
 - 3)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

 축물대장
 - 4) 「주택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 른 분양권, 조합원으로서

-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등

 5)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
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 부동산의 매매계약・공
 급계약 등 부동산 거래
- 6)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
 택의 소유현황 및 이력
 나.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
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전산
 정보자료
 - 1)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부동산등기
 - 2)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
- 5. 그 밖에 대상자등의 인적사 항·소득·재산 등을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 는 정보
- ②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는 제
 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
 요청하기 전에 대상자등에게
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
 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
-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(종합소득세 및지방세 과세자료, 이와 관련된

목에 한정한다) 제공을 요청할 | 공 요청은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 여야 하며 <u>다른 목적을 위하여</u>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납세자의 인적 사항 2. 사용 목적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 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정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및 자료제공은 「개인정보 보호 법」에 따라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 제공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동 의를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 수 있다. 이 경우 과세정보 제 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 로 제출받아야 한다.

3	제1항	<u>게</u>	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· ④ -----제3항까지에---------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---제공은-----
 - ⑤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 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,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 야 한다.
 - ⑥ 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절차, 동의의 방법・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
<신 설>

<신 설>

으로 정한다.

제64조의2(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) ①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,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, 「주택법」 제88조에 따른 주택정보체계및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수 있다.

②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는 제 64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자료 또는 정보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4조의3(금융정보등의 제공요 청 및 제공) ① 금융위원회 또 는 공사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 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등이 제6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 보회사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・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 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

용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하게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1한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7한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7조(벌칙) <신 설>

① · ② (생 략)

 ⑥
 제1항・제2항
 및
 제4항에

 따른
 금융정보등의
 제공
 등에

 필요한
 사항은
 대통령령으로

 정한다.

제67조(벌칙) ① 제6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・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